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9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박성훈 · 임종득
박덕흠 · 엄태영 · 김은혜
서명옥 · 권영진 · 박정하
김석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,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.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, 참석자 주요 의견,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·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).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·장소·토의내용·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(이하 “회의록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⑦ 이사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이사회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3조(이사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⑥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·장소·토의내용·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(이하 “회의록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</u> <u>⑦ 이사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